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0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및 제14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7조의5 및 제28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개정('18. 3. 20)으로 공휴일이 확대됨에 따라 공휴일을 대가 감액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서 1개월을 평균일수(20.6일)로 적용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소비자 물가지수 및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설계요율 및 감리원 배치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휴일을 대가 감액 조정 제한 사유에 포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 나. 월평균 근무일수 변경에 따라 [별표 2의2]를 적용하는 공사의 용역대가 정상화를 위해 일부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용역대가 감액규정 범위를 하향 조정(안 제24조제2항 개정)

- 다. 1개월을 22일로 계상하는 현행 규정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의 월평균 근무일수로 적용(안 제26조제4항, 별표 4 개정)
- 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설계요율을 상향 조정(안 별표 1 개정)
- 마. 월평균 근무일수 변경에 따라 [별표 2]를 적용하는 공사의 감리원 배치일수 보전을 위해 감리원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 및 소규모 배전단가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조정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별표 2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24조제2항가목(1) 중 "1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목 (2) 중 "10퍼센트"를 "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나목(1) 중 "1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목 (2) 중 "10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26조제4항 본문 중 "22일로 계상한다"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이하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라 한다)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개월을 기준으로 22일"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기준일"로, "야근근무"를 "야간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제18조제2항 관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제18조제2항 관련)

요율 공사비	요 율 (퍼센트)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계
2,000만원까지	<u>4.49</u>	<u>13.48</u>	<u>2.24</u>	<u>20.21</u>
3,000만원까지	<u>3.64</u>	<u>10.89</u>	<u>1.81</u>	<u>16.34</u>
5,000만원까지	<u>2.54</u>	<u>7.61</u>	<u>1.27</u>	<u>11.41</u>
1억원까지	<u>2.38</u>	<u>7.12</u>	<u>1.18</u>	<u>10.69</u>
2억원까지	<u>1.90</u>	<u>5.69</u>	<u>0.95</u>	<u>8.53</u>
3억원까지	<u>1.73</u>	<u>5.19</u>	<u>0.86</u>	<u>7.78</u>
5억원까지	<u>1.58</u>	<u>4.70</u>	<u>0.78</u>	<u>7.06</u>
10억원까지	<u>1.39</u>	<u>4.16</u>	<u>0.69</u>	<u>6.23</u>
20억원까지	<u>1.28</u>	<u>3.82</u>	<u>0.64</u>	<u>5.73</u>
30억원까지	<u>1.23</u>	<u>3.68</u>	<u>0.62</u>	<u>5.53</u>
50억원까지	<u>1.21</u>	<u>3.63</u>	<u>0.60</u>	<u>5.44</u>
100억원까지	<u>1.17</u>	<u>3.53</u>	<u>0.58</u>	<u>5.28</u>
200억원까지	<u>1.14</u>	<u>3.42</u>	<u>0.57</u>	<u>5.13</u>
300억원까지	<u>1.13</u>	<u>3.40</u>	<u>0.56</u>	<u>5.08</u>
500억원까지	<u>1.11</u>	<u>3.33</u>	<u>0.55</u>	<u>4.99</u>
1,000억원까지	<u>1.09</u>	<u>3.28</u>	<u>0.53</u>	<u>4.91</u>
2,000억원까지	<u>1.08</u>	<u>3.22</u>	<u>0.52</u>	<u>4.82</u>
3,000억원까지	<u>1.07</u>	<u>3.16</u>	<u>0.51</u>	<u>4.74</u>
5,000억원까지	<u>1.05</u>	<u>3.13</u>	<u>0.50</u>	<u>4.68</u>

※ 비 고

1. 발주자가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만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2.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별표 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제25조제1항 관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제25조제1항 관련)

단위 : 감리원수(인×월)

공사비(억원)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0.05	<u>0.18</u>	<u>0.19</u>	<u>0.21</u>
0.1	<u>0.30</u>	<u>0.33</u>	<u>0.36</u>
0.2	<u>0.51</u>	<u>0.56</u>	<u>0.63</u>
0.3	<u>0.70</u>	<u>0.78</u>	<u>0.85</u>
0.4	<u>0.87</u>	<u>0.96</u>	<u>1.1</u>
0.5	<u>1.1</u>	<u>1.2</u>	<u>1.3</u>
0.6	<u>1.2</u>	<u>1.3</u>	<u>1.5</u>
0.7	<u>1.4</u>	<u>1.5</u>	<u>1.6</u>
0.8	<u>1.5</u>	<u>1.6</u>	<u>1.8</u>
0.9	<u>1.6</u>	<u>1.8</u>	<u>2.0</u>
1	<u>1.8</u>	<u>1.9</u>	<u>2.1</u>
2	<u>3.0</u>	<u>3.3</u>	<u>3.6</u>
3	<u>4.1</u>	<u>4.6</u>	<u>5.0</u>
4	<u>5.1</u>	<u>5.6</u>	<u>6.3</u>
5	<u>6.1</u>	<u>6.7</u>	<u>7.4</u>
6	<u>7.0</u>	<u>7.8</u>	<u>8.5</u>
7	<u>7.9</u>	<u>8.7</u>	<u>9.6</u>
8	<u>8.7</u>	<u>9.7</u>	<u>10.6</u>
9	<u>9.6</u>	<u>10.6</u>	<u>11.7</u>
10	<u>10.3</u>	<u>11.5</u>	<u>12.7</u>
20	<u>17.7</u>	<u>19.6</u>	<u>21.6</u>
30	<u>24.0</u>	<u>26.8</u>	<u>29.5</u>
40	<u>30.1</u>	<u>33.4</u>	<u>36.7</u>
50	<u>35.6</u>	<u>39.7</u>	<u>43.6</u>
70	<u>46.2</u>	<u>51.4</u>	<u>56.5</u>
100	<u>60.8</u>	<u>67.5</u>	<u>74.3</u>
200	<u>103.6</u>	<u>115.1</u>	<u>126.6</u>
300	<u>141.5</u>	<u>157.2</u>	<u>172.9</u>
400	<u>176.6</u>	<u>196.1</u>	<u>215.8</u>
500	<u>209.5</u>	<u>232.8</u>	<u>256.1</u>

※ 비 고

1. 위 표의 감리원수는 고급감리원 기준이며,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직선보간법에 의한 효율산정방법

$$Y = y_1 - \frac{(X - x_2)(y_1 - y_2)}{(x_1 - x_2)}$$

Y : 해당 공사비 효율, X : 해당금액, x_1 : 큰 금액, x_2 : 작은 금액
 y_1 : 작은 금액효율, y_2 : 큰 금액효율

2. 공사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다만 4천만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감리원수 = $1.96X^{0.769}$ (X : 공사비)

- ② 여기서 복잡공종은 +10퍼센트 한 감리원수를 적용하고 단순공종은 -10퍼센트 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3. 등급별 감리원수는 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4. 책임감리원은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 따라 산출된 감리원수(인×월)가 총 공사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송전

· 변전·배전설비공사의 경우,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자재 부분 또는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배전설비공사의 경우, 가공과 지중공사가 혼재된 복합공사의 감리원수 산정은 가공공사비에 대한 감리원수와 지중공사비에 대한 감리원수를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가용전기설비공사의 경우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8. 발주자는 공사에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표 기준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리원을 추가 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감리비용은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위 표의 감리원수(인×월)에서 1개월이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의 월평균 근무일수를 말한다.
10. 위 표에 따라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할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의 합(합)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감리원에 대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재부분에 대하여 감리원수를 조정하도록 한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영 제20조제2항제8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전
사업자로 허가 받은 자가 발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
할 수 있다.

[별표 4] 직접경비 계상기준(제27조제1항 관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직접경비 계상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주 재 비 : 상주 직접인건비의 30퍼센트 다만, 도서지역과 산간벽지 내
공사 등은 해당 공사여건에 따라 할증할 수 있다.

2. 출장여비 :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퍼센트

3. 차 량 비

가. 차량대수

구 분	단 위	규 격	100억원 미만	1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500억원 이상
적 용	대	승용차 혹은 승합차	1	2	3이상

※ 발주자는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차량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산정방법

- 차량비계상의 구성요소는 손료, 재료비로 한다.
- 차량적용에서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합차는 배기량 3,000C
C이하로 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다. 손료 및 재료비

구 분	산정 일수	시간당손료계수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주연료	잡 품
승용차	<u>월평균 근무일수</u>	$1,547 \times 10^{-7}$	휘발유 10ℓ/일	주연료비의 10퍼센트
승합차	<u>월평균 근무일수</u>	$1,319 \times 10^{-7}$	경 유 10ℓ/일	주연료비의 10퍼센트

※ 손료는 감리기간에 따라 정산하며 일일 소모되는 주연료 및 잡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 월평균 근무일수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의 월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한다.

4. 현지 사무인원

구 분	단 위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비 고
보 통 인 부	명	1명	2명 이상	▪ 월평균 근무일수 기준 ▪ 상여금 400퍼센트 ▪ 퇴직적립금 100퍼센트 적용

※ 발주자는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현지 사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5. 도서인쇄비

각종보고서(월간보고서, 최종보고서, 특별보고서), 유지관리지침 및 설계 변경도서 등의 횟수, 면수, 부수 등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요령의 개정 규정은 요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거나 계약하는 설계·공사감리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대가조정의 제한) (생략)	제16조(대가조정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발주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24조(감리대가의 산출) ① (생략)	제24조(감리대가의 산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의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경우, 전단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공사감리용역대가에서 해당 범위까지 감액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 (1) 300세대 이상 400세대 미만: <u>15퍼센트</u> 범위	② ----- ----- ----- -----. ----- ----- ----- ----- -----. 가. ----- (1) ----- ----- <u>10퍼센트</u> -----

(2) 4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0퍼센트 범위

나. 건축물

(1)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15퍼센트 범위

(2)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10퍼센트 범위

제26조(직접인건비)

① ~ ③ (생략)

④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1개월을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감리일수가 1개월을 기준으로 22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야근근무를 하는 경우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감리대가를 추가 계상하거나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감리업무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은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2) -----
----- 5퍼센트 --

나. ----

(1) -----

10퍼센트 -----

(2) -----

5퍼센트 -----

제26조(직접인건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이하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라 한다)에 따른다. ---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기준일--- 야간근로-----.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 1]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제18조제2항 관련)

요율 공사비	요율 (퍼센트)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계
2,000만원까지	3.79	11.38	1.89	17.06
3,000만원까지	3.07	9.19	1.53	13.79
5,000만원까지	2.14	6.42	1.07	9.63
1억원까지	2.01	6.01	1.00	9.02
2억원까지	1.60	4.80	0.80	7.20
3억원까지	1.46	4.38	0.73	6.57
5억원까지	1.33	3.97	0.66	5.96
10억원까지	1.17	3.51	0.58	5.26
20억원까지	1.08	3.22	0.54	4.84
30억원까지	1.04	3.11	0.52	4.67
50억원까지	1.02	3.06	0.51	4.59
100억원까지	0.99	2.98	0.49	4.46
200억원까지	0.96	2.89	0.48	4.33
300억원까지	0.95	2.87	0.47	4.29
500억원까지	0.94	2.81	0.46	4.21
1,000억원까지	0.92	2.77	0.45	4.14
2,000억원까지	0.91	2.72	0.44	4.07
3,000억원까지	0.90	2.67	0.43	4.00
5,000억원까지	0.89	2.64	0.42	3.95

※ 비 고

1.~ 2. (생략)

[별표 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제25조제1항 관련)

단위 : 감리원수(인×월)

공사비(억원)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0.05	0.17	0.18	0.20
0.1	0.28	0.31	0.34
0.2	0.48	0.53	0.59
0.3	0.66	0.73	0.80
0.4	0.82	0.90	1.0
0.5	1.0	1.1	1.2
0.6	1.1	1.2	1.4
0.7	1.3	1.4	1.5
0.8	1.4	1.5	1.7
0.9	1.5	1.7	1.9

[별표 1]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제18조제2항 관련)

요율 공사비	요율 (퍼센트)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계
2,000만원까지	4.49	13.48	2.24	20.21
3,000만원까지	3.64	10.89	1.81	16.34
5,000만원까지	2.54	7.61	1.27	11.41
1억원까지	2.38	7.12	1.18	10.69
2억원까지	1.90	5.69	0.95	8.53
3억원까지	1.73	5.19	0.86	7.78
5억원까지	1.58	4.70	0.78	7.06
10억원까지	1.39	4.16	0.69	6.23
20억원까지	1.28	3.82	0.64	5.73
30억원까지	1.23	3.68	0.62	5.53
50억원까지	1.21	3.63	0.60	5.44
100억원까지	1.17	3.53	0.58	5.28
200억원까지	1.14	3.42	0.57	5.13
300억원까지	1.13	3.40	0.56	5.08
500억원까지	1.11	3.33	0.55	4.99
1,000억원까지	1.09	3.28	0.53	4.91
2,000억원까지	1.08	3.22	0.52	4.82
3,000억원까지	1.07	3.16	0.51	4.74
5,000억원까지	1.05	3.13	0.50	4.68

※ 비 고

1.~ 2. (현행과 같음)

[별표 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제25조제1항 관련)

단위 : 감리원수(인×월)

공사비(억원)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0.05	0.18	0.19	0.21
0.1	0.30	0.33	0.36
0.2	0.51	0.56	0.63
0.3	0.70	0.78	0.85
0.4	0.87	0.96	1.1
0.5	1.1	1.2	1.3
0.6	1.2	1.3	1.5
0.7	1.4	1.5	1.6
0.8	1.5	1.6	1.8
0.9	1.6	1.8	2.0

1	<u>1.7</u>	<u>1.8</u>	<u>2.0</u>
2	<u>2.8</u>	<u>3.1</u>	<u>3.4</u>
3	<u>3.9</u>	<u>4.3</u>	<u>4.7</u>
4	<u>4.8</u>	<u>5.3</u>	<u>5.9</u>
5	<u>5.7</u>	<u>6.3</u>	<u>7.0</u>
6	<u>6.6</u>	<u>7.3</u>	<u>8.0</u>
7	<u>7.4</u>	<u>8.2</u>	<u>9.0</u>
8	<u>8.2</u>	<u>9.1</u>	<u>10.0</u>
9	<u>9.0</u>	<u>10.0</u>	<u>11.0</u>
10	<u>9.7</u>	<u>10.8</u>	<u>11.9</u>
20	<u>16.6</u>	<u>18.4</u>	<u>20.3</u>
30	<u>22.6</u>	<u>25.2</u>	<u>27.7</u>
40	<u>28.3</u>	<u>31.4</u>	<u>34.5</u>
50	<u>33.5</u>	<u>37.3</u>	<u>41.0</u>
70	<u>43.4</u>	<u>48.3</u>	<u>53.1</u>
100	<u>57.2</u>	<u>63.5</u>	<u>69.9</u>
200	<u>97.4</u>	<u>108.2</u>	<u>119.0</u>
300	<u>133.0</u>	<u>147.8</u>	<u>162.6</u>
400	<u>166.0</u>	<u>184.4</u>	<u>202.9</u>
500	<u>197.0</u>	<u>218.9</u>	<u>240.8</u>

※ 비 고

1. (생 략)
2. 공사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다만 4천만원 이하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text{감리원수} = 1.84X^{0.769}$ (X : 공사비)

② (생 략)

3. ~ 8. (생 략)
9. 위 표의 감리원수(인×월)에서 1개월이란 22일을 말한다.

10. (생 략)

1	<u>1.8</u>	<u>1.9</u>	<u>2.1</u>
2	<u>3.0</u>	<u>3.3</u>	<u>3.6</u>
3	<u>4.1</u>	<u>4.6</u>	<u>5.0</u>
4	<u>5.1</u>	<u>5.6</u>	<u>6.3</u>
5	<u>6.1</u>	<u>6.7</u>	<u>7.4</u>
6	<u>7.0</u>	<u>7.8</u>	<u>8.5</u>
7	<u>7.9</u>	<u>8.7</u>	<u>9.6</u>
8	<u>8.7</u>	<u>9.7</u>	<u>10.6</u>
9	<u>9.6</u>	<u>10.6</u>	<u>11.7</u>
10	<u>10.3</u>	<u>11.5</u>	<u>12.7</u>
20	<u>17.7</u>	<u>19.6</u>	<u>21.6</u>
30	<u>24.0</u>	<u>26.8</u>	<u>29.5</u>
40	<u>30.1</u>	<u>33.4</u>	<u>36.7</u>
50	<u>35.6</u>	<u>39.7</u>	<u>43.6</u>
70	<u>46.2</u>	<u>51.4</u>	<u>56.5</u>
100	<u>60.8</u>	<u>67.5</u>	<u>74.3</u>
200	<u>103.6</u>	<u>115.1</u>	<u>126.6</u>
300	<u>141.5</u>	<u>157.2</u>	<u>172.9</u>
400	<u>176.6</u>	<u>196.1</u>	<u>215.8</u>
500	<u>209.5</u>	<u>232.8</u>	<u>256.1</u>

※ 비 고

1. (현행과 같음)
2. 공사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다만 4천만원 이하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text{감리원수} = 1.96X^{0.769}$ (X : 공사비)

② (현행과 같음)

3. ~ 8. (현행과 같음)
9. 위 표의 감리원수(인×월)에서 1개월이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의 월평균 근무일수를 말한다.

10. (현행과 같음)

<신 설>

[별표 4] 직접경비 계상기준(제27조 제1항 관련)

1. ~ 2. (생 략)
3. 차량비
 - 가. ~ 나. (생 략)
 - 다. 손료 및 재료비

구 분	산정 일수	시간당손료계수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주연료	잡 품
승용차	22일/월	1,547×10-7	휘발유 10ℓ/일	주연료비의 10퍼센트
승합차	22일/월	1,319×10-7	경 유 10ℓ/일	주연료비의 10퍼센트

<신 설>

라. 현지 사무인원

구 분	단 위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비 고
보 통 인 부	명	1명	2명이상	▪ 월 22일 기준 ▪ 상여금 400퍼센트 ▪ 퇴직적립금 100퍼센트 적용

마. 도서인쇄비
(생 략)

11. 영 제20조제2항제8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
라 배전사업자로 허가 받은 자
가 발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4] 직접경비 계상기준(제27조 제1항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차량비
 - 가. ~ 나. (현행과 같음)
 - 다. 손료 및 재료비

구 분	산정 일수	시간당손료계수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주연료	잡 품
승용차	월평균 근무일수	1,547×10-7	휘발유 10ℓ/일	주연료비의 10퍼센트
승합차	월평균 근무일수	1,319×10-7	경 유 10ℓ/일	주연료비의 10퍼센트

※ 월평균 근무일수는 한국엔지니
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 보고
서의 월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한
다.

4. 현지 사무인원

구 분	단 위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비 고
보 통 인 부	명	1명	2명이상	▪ 월평균 근무일수 기준 ▪ 상여금 400퍼센트 ▪ 퇴직적립금 100퍼센트 적용

5. 도서인쇄비
(현행과 같음)